공 개

의안번호	제126호
의 결 연 월 일	2026. 5. 6. (제 9 차)

의결사항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대영
제출 연월일	2026. 5. 6.

1. 의결주문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주회계법인의 2022. 7. 1.부터 2025. 3. 31.까지 기간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적사항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도,

- 대주회계법인은 일부 등록요건의 세부절차 마련이나 운영을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내용 >>

등록요건*	지적사항
2.가. 통합관리체계	자금·인사관리·회계 및 감사업무 수임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절차·운영 미흡
2.다. 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2.마.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운영 미흡
2.바. 감사업무 관련 정보 관리 체계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4.가.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 미흡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따른 구분이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22.10.4 증선위 보고)'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 점검표'의 점검내용을 기준으로 위반여부 판단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품질관리기준서1」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대주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설계나 그 운영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내용 >>

품질관리시스템 구성요소	지적사항
가.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①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운영 미흡
나. 윤리적 요구사항	①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다.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① 업무의 수용 및 유지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라. 인적자원	① 인적자원 관리 절차의 설계·운영 미흡 ② 감사업무시간 관리 절차의 운영 미흡
마. 업무의 수행	①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운영 미흡 ② 업무품질관리검토 정책과 절차의 설계·운영 미흡

나. 조치안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록요건	지적사항*1	중요도	조치안*6
2.가.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자금관리·인사관리·회계·감사업무 수임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미흡	보통*2	- 지정제외점수 140점 (보통 (2개) x 60점, 경미 (3개-2개) x 20점) - 시정권고
2.다.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구축·운영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경미*3	
2.마.감사업무시간 관리체계구축·운영	감사업무시간 관리체계 운영 미흡	경미*3	
2.바.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운영	감사조서 관리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경미*3	
4.가.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 미흡	보통*4*5	

*1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 부과 근거법규 시행일('22.5.3.) 이후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부과

*2 **'회계 및 감사업무 수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절차 및 운영상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자금·인사관리'에 대하여는 일부 통제 절차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어 위반 사항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중대')로 보기 어려우나, **'자금관리'**의 경우 ①**법인 內 여유자금**을 **각 사업본부**가 **운용**하는 점, ②**용역계약** 관련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 **용역대가**의 **적정성** 및 **자금집행**의 **타당성** 등 **점검 절차**가 **미비**하여 부당 외주용역 거래가 발견(2명)되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점,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일반직원**의 **급여**를 사실상 **각 사업본부**가 **결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일반직원에게 **과다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발견(1명)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인 전체수준의 통합관리체계를 갖추어 운영하도록 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보통'**으로 판단*하여, 최종 중요도를 세부 지적사항 중 가장 높은 중요도인 **'보통'**으로 판단

* 특수관계자 거래도 부당거래 발생 빈도(3명, 소속 공인회계사수 기준 0.5%)가 높지 않고 위반금액(449백만원)도 크지 않아 개인일탈로 판단하여 '보통'에 해당

*3 등록요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절차 및 운영에 미흡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함

*4 품질관리요소를 70% 이상 반영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감안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중대'로 볼 수 없으나, 법인차원의 기본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각**

사업본부에서 임의로 기본급을 결정(각 이사들의 기본급이 매년 상승 또는 하락하는 등 연간편차가 큼)**하도록 운영함**에 따라 기본급을 통해 **성과보상체계를 우회할 소지**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등록요건 관련 **내규, 기준, 통제절차** 등의 **구축 및 운영**이 **부실**하여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경미'가 아닌 **'보통'**으로 판단

*5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23.6.28.)에서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4.가)" 위반에 대해 ①**외감규정**의 **명확성**이 **일부 미흡**하고, ②**다수 회계법인**이 **유사한 상황**인 점 및 **제도 최초 적용**으로 인한 **계도기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일괄적**으로 **"경미"**로 **감경**하였고, 이후 타 감사인에게도 감경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대주 회계법인은 아래 사유로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① **계도기간 경과 등** : 성과보상체계(4-가)와 관련하여 기존 감사인감리('22년) 조치를 통해 등록요건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

② **재위반** : 기존('22년) 및 금번('25년) 감리결과 모두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구축 및 운영 부실**로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

③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성과급 중 **일부**를 **기본급**(지급기준이 없음)**으로 우회지급**

* 매년 성과급 OOO~OOO억원 가량 지급해오다가 '24사업연도('24.4월~'25.3월)부터 성과급을 OO억원으로 감소(품질평가지표 적절히 반영)하고, 기본급을 전년대비 OO억원(19%) 인상하는 등 성과급 일부를 기본급을 통해 우회지급

*6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조치 부과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개선권고

○ 지적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고 이행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개선권고사항 공개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공개

※ 공개 대상 개선권고 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회계감독국)에 통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2.라.)

* 감사인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4. 감리위원회 심의결과(2026.4.16. 제7차 감리위원회 심의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1)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17차('22.10.4.) 증선위 보고) (붙임2)

다.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붙임3)

<별지>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대주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 OOO OOOOO OOOO(OOO, OOOO)

2. 조치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29조 제3항,「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1호,「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2 제1항, 제1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시정권고*” 하고,

* 감사인 감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고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지정제외점수 140점을 부과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개선권고*” 하고,

*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여 이행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공개한다.

※ 공개 대상 개선권고 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회계감독국)에 통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2.라.)

* 감사인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3. 조치이유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가. 통합관리체계

□ **사실관계**

○ (인사) 소속공인회계사(이사)가 본인의 특수관계자인 일반직원(자녀)에게 실제 수행한 업무(기장 등) 대비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됨

○ (인사) 신규 입사하려는 구성원(소속공인회계사)의 채용에 대해 관리본부장의 사후승인된 사례가 발견되고, 내규상 일반직원 채용의 최종 승인권자를 경영진이 아닌 각 사업본부장으로 규정

○ (자금) 각 사업본부 내 계좌의 여유자금을 법인 통합관리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련 이자수익을 본부 수익으로 귀속

○ (자금) 일반직원이 수임한 용역 건에 대해 그 용역대가의 일부를 해당 일반직원의 특수관계법인(최대주주·대표이사)에게 외주용역비로 지급하였으나, 동 특수관계법인의 용역산출물 등이 없음(7건, 총 3.1억원)

- 회계법인이 수임한 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담당자(일반직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특수관계자(자녀)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됨(1명, 총 39백만원)

○ (회계) 회계처리에 대해 관리본부가 아닌 각 사업본부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사업본부 내 회계처리 전담직원이 있음에도 이사, 소속 공인회계사 및 일반직원 등의 회계처리가 가능

* 관리본부는 월 2회 자금 집행 시 관련 내용을 사후 확인

- 각 사업본부 내 회계처리자들은 내규상 회계 계정과목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회계처리를 수행

○ (감사업무 수임) '계약전 위험평가서'가 최종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견

- 사업본부장이 감사업무 담당이사인 경우 '계약전 위험평가서'를 본인이 작성·승인하고 있음

□ 관련 근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에 따르면 감사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인사) 일반직원 채용 및 보수지급 관련 통합관리 미운용

○ (자금) 자금관리 및 외주용역비 집행 시 통합관리 미흡

○ (회계) 회계처리 수행 및 업무분장 관련 통합관리 미흡

○ (업무 수임) 위험평가 승인 관련 통제절차 미흡

<중요도판단 : 보통>

○ 회계 및 감사업무 수임 관련 중요도 판단 수준이 각각 경미로 판단되었으나, 인사 및 자금 관련 중요도 판단 수준이 보통으로 판단됨에 따라 최고 수준인 "보통"으로 판단

- (인사·자금) 특수관계자 부당 용역계약(2건) 및 급여과다지급(1건)이 발생하였고, 법인 내 여유자금을 각 사업본부가 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통"
- (회계) 회계처리 관련 운영상 일부 미흡 등에 비추어 "경미"
- (업무 수임) 위험평가 문서화 관련 운영상 일부 미흡 등에 비추어 "경미"

나. 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 **사실관계**

○ 독립성확인대상자의 독립성 정보 지연 또는 미신고 발견, 연결감사업무의 계약 전 위험평가 시 종속회사 등의 특수관계자 정보 입력 누락[13건(35.1%), 표본 37건]

□ **관련 근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중 2. 물적설비와 업무방법 '다'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 있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독립성 유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독립성 관련 정보가 적시에 수집되거나 입력되지 않음

<중요도판단 : 경미>

○ 재무적 이해관계를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하거나 계약전 위험평가시 감사대상 회사의 특수관계자를 일부 누락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판단

다.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 **사실관계**

○ 감사업무시간을 지연하여 입력 또는 승인한 사례 발견

○ 최종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 실시내용과 전산시스템상 집계시간의 일치 여부 확인 절차가 없고, 불일치한 사례 발견

□ **관련 근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중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마'에 따라 소속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감사업무시간 입력·승인 및 감사업무시간 공시 관련 통제절차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감사업무시간의 지연입력·승인 및 공시된 감사시간과 내부 집계시간의 불일치 등 운영상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판단

라. 감사업무 관련 정보 관리 체계

□ 사실관계

○ 감사조서 취합기한을 초과하여 취합되거나 중요 감사조서 및 관련 증빙들이 최종 감사조서 취합 시 누락된 사실 발견되었고, 서면조서 출고 후 지연반납 또는 장기간 미반납 등의 사례가 발견

○ 서면조서의 봉인씰 부착상태가 미흡하고, 감사조서 취합 후 내규상 수정사유와 달리 담당자 재량으로 감사조서가 수정 또는 추가됨

□ 관련 근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중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바'에 따라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감사조서의 취합, 관리 체계 등을 미흡하게 운영

<중요도판단 : 경미>
○ 일부 감사조서의 취합기한 경과 및 서면조서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미흡 등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판단

마.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 사실관계

○ '기본 연봉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급호별 기본급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이사의 기본급을 정해야 하나 기준표상 급호를 정하기 위한 기준 또는 정의가 없으며,

- 각 사업본부장은 급호별 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기본급을 이사회의에 입안 및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결정되는 등 사실상 기본급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감사품질 평가지표와 보상이 실질적으로 연동되지 않을 소지가 높음

□ 관련 근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중 4. 보상체계 '가'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지적사항

○ 기본급이 사실상 임의로 결정되어 감사품질 평가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높음

<중요도판단 : 보통>

○ 법인차원의 기본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각 사업본부에서 임의로 기본급을 결정(각 이사들의 기본급이 매년 상승 또는 하락하는 등 연간편차가 큼)하도록 운영함에 따라 기본급을 통해 성과보상체계를 우회할 소지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성과평가 결과에 감사품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어 '보통'으로 판단*

* 성과보상체계 관련 직전 감사인감리('22년) 조치를 통해 등록요건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계도기간 경과)되었음에도,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재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가.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①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운영 미흡(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대주회계법인은 '기본 연봉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급호별 기본급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이사의 기본급을 정해야 하나,

- 각 감사업무 담당이사에 대해 위 기준표상 급호를 정하기 위한 기준 또는 정의가 없으며, 급호별 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기본급이 각 사업본부 내 이사회의에서 입안 및 결정

□ **관련 근거**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 및 문단 A5에 의하면 회계법인은 구성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보상 및 승진(성과급제도 포함) 등과 관련하여 품질이 업무수행 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감사업무 수행이사에 대한 감사품질 평가결과가 보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급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나. 윤리적 요구사항

①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재무적 이해관계 및 고용관계 등 발생시 14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연·미신고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약 전 위험평가 시 특수관계자 정보입력을 누락한 사례 발견

□ 관련 근거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0 ~ 23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등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또한, 회계법인은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이 통보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독립성 정보가 누락 없이 적시에 수집될 수 있도록 점검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감사계약 체결 전 위험평가 시 특수관계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업무수행이사)을 명확히 하고, 품질관리실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다.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① 업무의 수용 및 유지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계약전위험평가서'의 최종 승인 전 감사계약 체결하거나 감사업무 수행 이사가 '계약전위험평가서'의 작성과 승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감사 위험을 재평가했으나 판단 근거를 미기재

□ 관련 근거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6 및 27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성실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여야 하며,

-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을 요구하여야 함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8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만약 조기에 알았더라면 그 업무를 거절하였을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상황을 다루는, 업무 및 의뢰인 관계의 유지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이러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때에는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전문직 책임과 법적 책임(회계법인을 선임한 사람(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규제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포함)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지적사항**

○ 감사팀이 '계약전 위험평가표' 승인 및 계약심사 완료 후 감사계약서을 체결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 계약전 위험평가 승인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후 위험 재평가 시 평가된 위험이 변동되는 경우 그 사유를 충실히 문서화하도록 관리할 필요

라. 인적자원

① 인적자원 관리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공인회계사 신규 채용 시 관리본부장의 최종 승인 절차 미준수

□ **관련 근거**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9 및 문단 A24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법인 차원의 채용 관련 검토·승인 절차를 운영하는 등 인적자원 관리 정책과 절차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

② 감사업무시간 관리 절차의 운영 미흡(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감사업무시간을 지연입력 및 지연승인하거나, 외부감사 실시내용과 전산

시스템상 집계시간의 불일치

□ **관련 근거**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1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문단 한A31-1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의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적시성 있게 집계하고 적절히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감사업무시간이 적시에 정확하게 집계·공시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마. 업무의 수행

① 감사조서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감사조서 취합기한의 미준수, 봉인씰 부착상태가 미흡하거나 취합이 완료된 감사조서에 대한 임의 수정 및 승인 사례 발견

□ **관련 근거**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45 및 A54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법규에 취합 기한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회계법인이 그 기한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46 및 A56~A58 등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업무문서가 종이, 전자, 또는 기타 형태의 매체인지에 관계없이, 회계법인이 모르게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분실, 손상될 수 있다면 기초데이터에 대한 무결성과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므로 업무문서의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통제를 진행해야 하고, 인쇄된 업무문서의 경우, 이에 대한 접근제한과 적절한 배포 및 비밀유지가 되는 보관이 가능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지적사항**

○ 감사조서를 적시에 취합하고, 서면조서의 경우 불출을 금지하는 등 감사조서 관리정책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

2 업무품질관리검토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심리대상회사의 사전심리시간에 대한 내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발견

□ **관련 근거**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6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충분한 사전심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심리 투입시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붙임1)

관계 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③ (생략)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 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③ (생략)

④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이하 생략)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인에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4.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이하 이 조에서 "시정권고"라 한다)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제2항의 이행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이행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 이내에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제1항제2호의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⑧ (생략)

⑨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 제16조제2항제1호: 지정제외점수 부과

⑩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 3
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및 별표 4의2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⑤ (생략)

⑥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영 제29조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개선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나. 사업보고서 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 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
6.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 접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 감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⑧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8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⑩ 감리집행기관은 제9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⑫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평가방법, 평가 수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② (생략)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사후관리) ① (생략)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사항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1. 감사인 감리 중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2. 그 밖에 감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경미한 개선권고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감사인이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③ (생략)

④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가기준 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1) 대표이사: 10년 이상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2) 감사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 법령등·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자문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7) 감사조서 관리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지방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수	40명～70명	71명～100명	101명～300명	301명～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人事),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受任)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갖출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

3. 심리체계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할 것

나. 심리의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1) 주권상장법인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4. 보상체계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여부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4) 교육시간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다. 생략

라.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별로 각각 차감한다(차감되는 점수 비율의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본다). 다만,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 2%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1%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품질관리수준 평가) ① 규정 제23조제12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중 평가결과 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중 계량지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고,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한다.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나 사원총회(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한 18-1, A4-A5 참조)

문단 20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7-A10 참조)

문단 21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이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은 구성원(해당되는 경우,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 포함)에게 회계법인의 독립성 요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함.

(b)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식별·평가하고, 안전장치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적합한 조치를 취함. 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법규상 해지가 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함. (문단 A10 참조)

문단 22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a) 독립성 요구사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의 범위 포함)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한다.

(b)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c)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하도록 한다.

(i)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ii)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한다.

(iii)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문단 A10 참조)

문단 23 회계법인은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이 통보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구성원들은 자신이 알게 된 독립성 위반을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b) 회계법인은 이러한 정책과 절차의 위반을 식별한 경우, 다음의 사람들에게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i) 회계법인과 더불어 독립성 위반에 대처할 책임이 있는 업무수행이사
(ii) 적합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회계법인(적절한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 포함) 내의 다른 관련 구성원 및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자
(c)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이사와 상기 (b)(ii)에서 언급한 다른 개인들은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법인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단 A10 참조)

문단 26 회계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음. (문단 A18, A23 참조)
(b)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c) 회계법인은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하였으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문단 A19-A20, A23 참조)

문단 27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a) 새로운 의뢰인과 업무를 수용하기 전, 기존의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 그리고 기존 의뢰인과의 새로운 업무를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입수함. (문단 A21, A23 참조)
(b)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함

문단 29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에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단 A24-A29 참조)

문단 31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단 36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보고서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A42-A43 참조)

문단 45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54-A55 참조)

문단 46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56-A59 참조)

문단 A5 품질에 기반한 내부문화의 촉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의 사업전략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인 품질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회계법인의 리더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문화의 촉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회계법인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보상 및 승진(성과급제도 포함)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함.

(b) 사업적인 고려가 업무의 품질에 우선하지 않도록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여함.

(c)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문서화하며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제공함.

문단 A24 회계법인의 인적자원에 대한 정책과 절차와 관련된 이슈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채용
- 업무수행 평가
- 배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 역량
- 적격성
- 경력 개발
- 승진
- 보상
- 인력수요의 추정

회계법인은 효과적인 채용 과정과 절차를 통해, 회계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적절한 특성을 갖춘 성실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A31-1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의 경우, 해당 감사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단31 (a) 참조)

(a) 개별 감사업무별로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한 업무팀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을 적시성 있게 집계함.

(b) 개별 감사업무별로 집계된 감사시간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함. 예를 들어, 그 감사시간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집계된 감사시간기록의 임의적인 수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문단 A54 특정 유형의 업무에 있어서는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완료 기한이 법규에 규정될 수도 있다. 법규에 이러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단 45에서는 회계법인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할 필요성에 따라 그 기한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업무의 경우, 이러한 기한은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 A56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승인이 없거나 정보공개의 법적 또는 전문가적 의무가 있지 않는 한,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업무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항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특정 법규에서는 특히 개인적 성격의 데이터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구성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문단 A57 업무문서가 종이, 전자, 또는 기타 형태의 매체인지에 관계없이, 회계법인이 모르게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분실, 손상될 수 있다면 기초데이터에 대한 무결성과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업무문서의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하고 실행하는 통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업무문서를 언제 그리고 누가 작성, 변경 및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
-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특히 정보가 업무팀 내부에 공유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전송되는 경우, 정보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통제
- 업무문서의 승인되지 아니한 변경을 방지하는 통제
- 그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팀과 타 승인된 당사자의 업무문서 접근을 허용하는 통제

문단 A58 회계법인이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하고 실행하는 통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전자형태의 업무문서에 대한 접근을 승인된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

도록 업무팀원간에 비밀번호 사용

- 업무의 적절한 단계에서 전자형태의 업무문서를 적합하게 저장하는 절차
- 업무문서를, 업무의 시작단계에서 업무팀원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업무 중에 작성하며, 업무 종료시에 취합하는 절차
- 인쇄된 업무문서의 경우, 이에 대한 접근제한과 적절한 배포 및 비밀유지가 되는 보관이 가능한 절차

□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9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관찰과 질문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문단 12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적합한 절차들이 지켜졌는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이 적합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8-A9 참조)

문단 24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러한 이슈를 해결한 방법
(b) 해당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내용
(c)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도달된 결론
(d)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시된 자문의 성격, 범위와 그 결론 (문단 A37 참조)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단 A2-A5, A16-A17 참조)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A6-A7 참조)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문단 A8-A11 참조)

문단 14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하나의 감사파일로 취합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일 후 최종감사파일을 취합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적시에 완료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8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5- A37 참조)

(a)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문단 A38- A44 참조)
(b)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함 (문단 A45-A48 참조)
(c)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문단 A49 참조)

문단 9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문단 A50-A51 참조)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52 참조)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문단 7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를 이용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외부조회의 요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a)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 (문단 A1 참조)
(b)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문단 A2 참조)
(c) 조회서에 수신인이 적절히 표시되었으며 감사인에게 직접 발송되도록 회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등 조회서의 설계 (문단 A3-A6 참조)
(d) 조회처에 대한 조회요청서의 발송. 적용가능한 경우 후속확인조회서를 포함한다.(문단 A7 참조)

문단 A4 조회서를 설계할 때 고려할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관련 경영진주장
- 부정위험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조회서의 구성과 표시
- 해당 감사업무 또는 유사업무에 관한 사전 경험
-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예를 들어, 종이형태나, 전자문서 또는 기타매체의 방법)

- 조회처가 감사인에게 회신해 주도록 하는 경영진의 승인이나 독려. 조회처는 경영진의 승인이 있는 조회서에 대해서만 회신하려고 할 것이다.
- 의도된 조회 대상자가 요청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개별송장 별 금액 대 총잔액)

감사기준서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의 요구에 따라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9-A61 참조)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62-A67 참조)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함.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8-A70 참조)

(i) 이용된 측정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문단 A71-A76 참조)

(ii)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문단 A77-A83 참조)

(c) 적합한 실증절차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함 (문단 A84-A86 참조)

(d)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 감사인은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7-A91 참조)

(i)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과 다른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가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 이것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 데 충분하도록 경영진의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해함 (문단 A92 참조)

(ii) 만약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하여 범위추정치 내의 모든 결과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해당 범위추정치를 좁힘 (문단 A93-A95 참조)

문단 1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한 실증절차들에 추가하여, 유의적 위험을 초래하는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2 참조)

(a) 경영진이 대체적인 가정이나 결과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나 결과를 왜 기각하였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의 추정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문단 A103-A106)

(b) 경영진이 이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인지 여부 (문단 A107-A109 참조)

(c) 경영진이 이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인지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특정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하려는 경영진의

의도 및 이를 수행할 능력 (문단 A110 참조)

문단 16 감사인은 만약 경영진이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의 추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경우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범위추정치를 도출하여야 한다. (문단 A111-A112 참조)

문단 18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16-A119 참조)

문단 2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 및 그 공시의 합리성에 대한 감사인 결론의 근거
(b)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들 (문단 A128 참조)

문단 A92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할 때 경영진의 가정이나 방법과는 다른 것을 사용한다면, 문단 13(d)(i)에서는 감사인이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이나 모델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이해를 통해 적합한 점추정치나 범위추정치를 도출할 때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또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과는 상이하지만 동일하게 타당성이 있는 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영진의 회계추정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해당 회계추정치가 특정 가정에 매우 민감하여 높은 추정불확실성에 해당되고, 해당 회계추정치에 유의적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달리, 이러한 차이가 경영진의 사실적 오류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감사인은 사용된 가정의 근거와 그러한 가정들의 타당성, 그리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접근법의 차이에 대하여 경영진과 토의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문단 13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a) 특수관계자들의 신원(전기로부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포함) (문단 A11-A14 참조)
(b) 기업과 특수관계자들간 관계의 성격
(c) 기업이 해당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체결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거래의 형태와 목적

문단 14 경영진이 다음 목적을 위해 수립한 통제가 있을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통제를 이해하기 위해 경영진 및 기업 내부의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기타의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5-A20 참조)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식별, 회계처리 및 공시
(b)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와 약정에 대한 권한부여와 승인 (문단 A21 참조)
(c)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와 약정에 대한 권한부여와 승인

문단 18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감사기준서 315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 중 유의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 시, 식별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해야 한다.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문단 1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은 모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하여 선정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테스트하지 않는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된다.

문단 36 감사인은 기업의 통제가 각 관련경영진주장의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에 중요한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여야 한다. (문단 A46-A47 참조)

문단 37 기업의 통제가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적격성을 보유한 사람에 의해 규정된 대로 운영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통제가 기업의 통제목적을 충족하고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통제의 설계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문단 A48-A49 참조)

문단 38 감사인은 통제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는지 여부와 통제를 수행하는 사람이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문단 A50-A51 참조)

문단 39 테스트되고 있는 통제와 연관된 위험이 증가할수록, 감사인이 입수해야 할 증

거의 충분성과 적합성도 증가하여야 한다. (문단 A52-A55 참조)

문단 40 감사인은 각각의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하여 선정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하여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감사인이 개별 통제 각각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책임은 없다. (문단 A56-A61 참조)

문단 41 선정된 통제가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서, 해당 통제 자체가 테스트되어야 한다. 실증절차에 의해 발견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증절차에 의해 발견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테스트를 결정할 때 감사인의 위험평가에 반영된다.

문단 42 감사인이 통제 이탈을 식별하는 경우, 감사인은 이탈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테스트되고 있는 통제와 연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및 입수하여야 할 증거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62 참조)

문단 43 일정 시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충분한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때, 충분한 기간은 기업의 재무제표의 대상기간인 전체 기간(일반적으로 1년)보다 짧을 수 있다. 감사인은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하여, 평가기준일에 가깝게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는 것과 충분한 기간에 걸쳐 통제를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간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문단 A63-A66 참조)

문단 44 감사인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보고하고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는 기중 일자에 입수하는 경우, 감사인은 잔여기간의 통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67-A68 참조)

문단 45 후속연도 감사에서, 감사인은 필요한 테스트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감사인이 과거에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지식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A69-A71 참조)

문단 46 또한, 감사인은 예측불가능성을 통제테스트에 도입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간마다 통제테스트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 (문단 A72 참조)

문단 A50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는 적합한 기업 담당자에 대한 질문, 특정 통제의 운영에 대한 관찰, 관련 문서의 검사 그리고 통제의 재수행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질문만으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은 질문과 결합하여,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때 적합할 수 있는 다른 감사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

문단 33 당기감사인은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회사, 당기감사인 및 전임감사인의 최종결론과 결론도출근거,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는 경우 재감사를 누가 수행하는지 여부, 3자의 합의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예, “전기오류 수정에 관한 확인서”)에 세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17차('22.10.4.) 증선위 보고)

1. 보고주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이하 "등록감사인")은 등록요건을 유지해야하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등록취소이외에도 **시정권고, 지정제외점수부과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양정기준 등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등록요건 미유지에 따른 조치대상 등 판단기준

□ **(위반행위 발생시점)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 부과**(이하 "기본조치")는 근거법규 **시행일**('22.5.3)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

○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 고려)**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은 지난번 감리대상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금번 현장감리 시작일의 직전 분기말이므로

- **2022년 하반기 감사인 감리**('22.7월 이후 착수)부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확인**시 **조치**할 계획

□ **(등록심사기준 활용)**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여부, 위반정도 등 판단에 **등록심사시 적용된 기준***을 **활용**

* 등록심사시 활용한 등록심사 점검표의 점검내용 등

○ **등록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등록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면**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심사 기준을 활용하여 **등록요건 유지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

<등록요건 유지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 등록 당시 감사인이 구축한 체계*1 등이 등록 이후 실제 운영이 미흡한 경우에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2으로 볼 수 있음

*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

*2 등록요건 중 "체계를 갖출 것"의 의미는 갖추어진 체계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실행되어 그 목적(통합관리, 품질관리 등)을 달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영증빙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등록심사시 점검

◈ 등록심사시 확인되었다면 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을 사항이나 등록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유형

□ **(조치유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는 ❶증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와 ❷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

○ 위반시 조치의 종류, 수준(양정)은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Ⅲ.조치양정기준"에 따라 판단

□ **(개선권고와 구분)** 품질관리감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권고"와 "시정권고"**는 모두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이나 각 **조치의 성격, 근거 법규·기준, 후속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개선권고 및 시정권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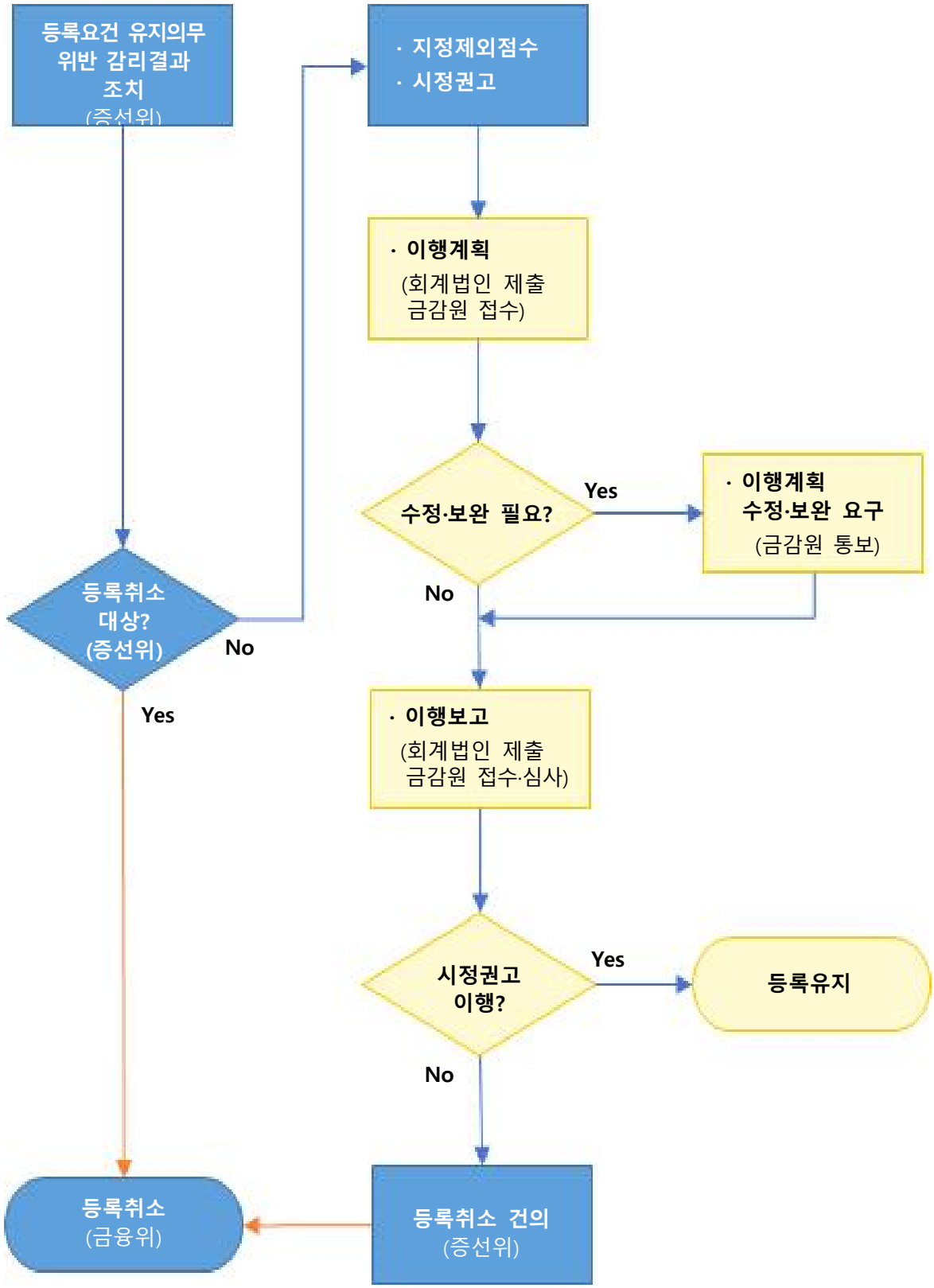
구분	개선권고	시정권고
조치 성격	• 품질관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주목적	• 등록취소 조치 전 위반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관련 법규	• 외감법 §17①, §29⑤~⑦ • 외감규정 §36②	• 외감법 §9의2④, ⑤ • 외감규정 §8의2①
이행계획 제출기한	• 3개월(이행 진행상황 제출)	• 1개월
이행기한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함	• 6개월
이행결과보고	• 이행기한 이후 1개월이내	•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
미이행시 조치	• 미이행사실을 대외공개 가능	• 등록취소 가능

- 특정 품질관리체계 관련 미흡사항*이 **품질관리기준 위반과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 근거법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조치**할 **필요**

* 감사투입시간 관리체계 운영 미흡(예: 감사투입시간 승인절차 누락 등)

등록요건(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마목)	품질관리기준 (한A31-1)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시, 다음 사항 고려 필요 (a) 개별 감사업무별로 **업무팀**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을 **적시성 있게 집계함** (b) 개별 감사업무별로 **집계된 감사시간**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 절차 〉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기본조치**(지정제외점수 부과 등)와 **등록취소 건의**는 **병과 가능**하나,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건의**는 **생략 가능**

다. 조치양정기준(안)

1 일반원칙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각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조치는 ①증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와 ②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로 구성

※ 등록 및 등록취소는 금융위 권한이므로 증선위가 금융위에 취소 건의

< 조치양정 기준 일반원칙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은 외감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서 규정한 각 목의 **등록요건별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

②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조치("기본조치")와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병과 가능**

-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아니할 수 있음**

2 위반행위의 중요도

가 중요도 구분

□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중대, 보통, 경미 3단계**로 구분하고

○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중요도 구분 기준

구 분	정 의
중대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 내부통제 등[1] 또는 조직·물적설비 등[2]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매우 부실**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중요한 경우
보통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미흡**한 경우로 **'중대' 또는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수준의 위반행위인 경우 ○ 내부통제 등[1] 또는 조직·물적설비 등[2]에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부실**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미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일부 미흡**한 경우 ○ 내부통제 등[1] 또는 조직·물적설비 등[2]에 **일부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일부 부실**하나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한 다음과 같은 경우 - 단순한 착오, 실수 등에 의해 발생한 위반사항 - 감사인 감리시 표본검사(Sampling test)에 따른 품질관리시스템 등 운영 관련 미흡사항으로 위반 건수, 기간, 비율이 경미한 경우 - 동일한 등록요건 중 위반행위가 외부감사규정 제3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증선위가 경미한 개선권고사항으로 판단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등

주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이하 "내부통제 등"이라고 함)
2)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시스템, 기타설비 등을 의미(이하 "조직·물적설비 등"이라고 함)

나 등록요건별 세부판단기준

□ 중요도 판단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요건별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

1. 인력요건(외감규정 별표1제1호)

위반중요도 /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① (1-가)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유지(지방소재 법인은 20인)	▪ 위반기간[1]이 120일 이상	▪ 위반기간[1]이 60일 이상 120일 미만	▪ 위반기간[1]이 30일 이상 60일 미만
② (1-나) 대표이사 경력 10년 및 품질관리담당이사 경력 7년 이상	▪ 위반기간[1]이 90일 이상	▪ 위반기간[1]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 위반기간[1]이 30일 미만
③ (1-다) 품질관리업무담당자 경력 5년 이상	▪ 위반기간[1]이 90일 이상	▪ 위반기간[1]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 위반기간[1]이 30일 미만
④ (1-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관리업무만을 수행	▪ 위반시간[1]이 90시간 이상	▪ 위반시간[1]이 3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 위반시간[1]이 30시간 미만
⑤ (1-마) 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유지해야 할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최소 1명 이상)	▪ 위반기간[1]이 120일 이상	▪ 위반기간[1]이 60일 이상 120일 미만	▪ 위반기간[1]이 30일 이상 60일 미만
주1) 위반기간 = Σ(위반인원 × 위반일수) 위반시간 = Σ(위반인원 ×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			

※ 인력요건(①, 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예: 30일) 미만의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음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외감규정 별표1 제2호)

위반중요도 /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⑥ (2-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1]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⑦ (2-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⑧ (2-다)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위반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점검·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⑨ (2-라)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방식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⑩ (2-마) 외부감사 투입시간을 신뢰성, 타당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⑪ (2-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주1) 체계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규정·제도, 물적설비, 인력, 조직 등을 의미(이하 동일)			

3. 심리체계(외감규정 별표1 제3호)

위반중요도 /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⑫ (3-가)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심리를 수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⑬ (3-나) 심리대상 · 범위 · 방법 · 절차, 심리담당자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⑭ (3-다) 주권상장법인 등 필수 심리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하기 전 사전심리를 완료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필수 사전심리 대상회사의 20% 이상 미실시[1]	▪ 필수 사전심리 대상회사의 10% 이상 20% 미만 미실시	▪ 필수 사전심리 대상회사의 10% 미만 미실시

위반중요도 /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⑮ (3-라)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사후심리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사후심리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15%[2] 미만 실시[1]	▪ 사후심리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15% 이상 25% 미만 실시	▪ 사후심리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25% 이상 30% 미만 실시
⑯ (3-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문서화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주 1) 심리수행자, 내용, 절차, 방법 등이 매우 부실하여 사실상 심리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심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소수점 이하는 절상			

4.보상체계(외감규정 별표1 제4호)

위반중요도 /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⑰ (4-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이사 성과평가시 감사업무 품질평가 지표의 비중이 50% 미만이거나 ▪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성과평가, 보상체계가 현저히 미흡	▪ 50% 이상 60% 미만 ▪ 미흡	▪ 60% 이상 70% 미만 ▪ 일부 미흡
⑱(4-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은 다음의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1) 이사인 경우 :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 제외)의 평균 연봉	▪ 품질관리업무담당자의 평균 연봉이 요건상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	▪ 80% 이상 90%미만	▪ 90% 이상 100%미만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가 등록취소 건의

□ **시정권고 미이행**, 다수의 **등록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시 금융위에 **'등록취소 건의'**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사유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법 제29조제3항 제1호**(등록취소) 또는 **제2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의 조치**를 받은 경우

③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④ **중대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이 다수 발견**되는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의 **적격성이 훼손**된 경우

⑤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요도 "중대" 이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받은 날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감사인 감리(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의 감리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점검이 감리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에서 동일한 등록요건에서 중요도 "중대" 이상으로 재위반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위반행위의 성격, 위반정도, 등록요건의 구축·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본조치 :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와 함께 **위반의 경중 등**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

① **(보통 이상)** 지정제외점수는 **등록요건별**(18개)**로** 가중·감경 적용 후 **최종 중요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는 **'기본 지정제외 점수표'**에 해당하는 **지정제외점수**를 **산정**하고

- **다수의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요건별**로 산정된 **지정제외 점수를 합산**

기본 지정제외점수표

중요도			
가중시 최대	중대	보통	경미
150	100	60	-

<상장사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대한 감독 대폭 강화 (보도자료('22.5.3)>

-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될 예정임을 발표

② **(경미)** 등록요건별로 위반에 따른 최종 중요도가 "**경미**"인 경우 "**경미"에 해당하는 등록요건별 위반의 수*를 기준**으로 "경미 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 산정**

경미 지정제외점수표

경미한 등록요건별 위반 개수	
3개 이상	3개 미만
(위반 개수 - 2) x 20	-

* 등록요건별(총 18개)로 각 위반에 대해 지정제외점수를 별도로 부과하므로 단순 착오, 오류 등의 경미한 위반 1건에 대해서도 지정제외점수 부과시 조치수준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3개 미만에 대해서는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함

③ **(최종부과)** 등록요건별로 "**보통" 이상**의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①와 등록요건별로 "**경미**"에 해당하는 위반항목 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②**를 합산**하여 **최종 지정제외점수 결정**

다 조치의 가중 · 감경

□ 가중 · 감경은 **각 사유별로 1단계 가중 · 감경**할 수 있고, **등록요건별로 구분**하여 **최종 중요도 결정시 적용**

○ **(가중)** 중요도, **재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가중**

< 조치 가중사유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요도 "**보통" 이상으로 증선위로부터 조치받은 날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감사인 감리(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의 감리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점검이 감리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에서 동일한 등록요건 내에서 유사한 사항에 대해 중요도 "**보통" 이상**으로 **재위반**하는 경우

② 금감원의 감독 . 감리업무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으로 **감독 . 감리업무를 방해**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경) 위반행위**의 보고 및 **시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감경**

< 조치 감경사유 >

① **감사인 감리 착수 통보 전** 등록요건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즉시 자진신고**하고 등록요건에 부합되게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인 경우

③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향후 계획

□ 증선위에 보고된 **조치양정기준**을 따라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시 일관되게 적용

○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동 조치양정기준에 따른 처리안을 증선위 부의 예정

(붙임3)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1.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2.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3. **일부 미운영**

1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내규인 '기본 연봉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급호별 기본급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이사의 기본급을 정해야 하나,

- 각 감사업무 담당이사에 대해 위 기준표상 급호를 정하기 위한 기준 또는 정의가 없으며, 급호별 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기본급이 각 사업본부 내 이사회의에서 입안 및 결정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내규상 재무적 이해관계 및 고용관계 등 발생시 14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미신고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 본인의 겸직사실(회계법인 외 고용관계)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 계약 전 위험평가 시 감사대상 회사의 종속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독립성 준수 대상 회사로 등록되고 있으나, 일부 감사업무의 경우 종속회사 등 특수관계자를 완전하게 입력하지 않았음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내규로 법인 전체 수준에서의 감사업무 수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계약전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흡사항이 발견됨

- **(위험평가전 감사계약체결)** '계약전 위험평가서' 승인 전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

- **(수임절차 운영 미흡)** 사업본부장이 감사업무 담당이사인 경우 '계약전 위험평가서'를 본인이 작성·승인하고 있음

- **(위험재평가 사유 미기재)** 일부 회사는 계약전 위험평가서상 평가된 위험보다 재평가 시 위험을 더 낮게 평가하였음에도 관련 사유 및 판단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4 인적자원

○ 내규상 신규 입사하려는 구성원(소속공인회계사)은 사전에 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미준수한 사례가 발견됨

○ 내규에 따라 감사투입시간의 입력 및 승인규정을 정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감사업무시간을 지연입력하거나 지연승인한 사례가 발견됨

- 품질관리실은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절차로서 해당 감사팀으로 '외부감사 실시내용'과 전산시스템상 집계시간의 일치여부 점검을 요청하고 있으나, 최종 감사보고서 발행 시 실제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통제절차가 없으며, 공시시간과 집계시간이 실제 불일치한 사례가 발견됨

5 업무의 수행

○ 내규에 따르면 감사업무 담당이사는 전자조서 및 실물조서를 업무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합을 완료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연취합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중요 감사조서 및 관련 증빙들이 감사조서에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 서면 감사조서 관련하여서는 '봉인씰' 부착상태가 미흡하고, 출고된 감사조서가 장기간 반납되지 않거나 지연반납되는 등 사후관리도 미흡

- 한편, 내규상 취합이 완료된 감사조서 수정은 부득이한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품질관리실 담당자가 재량으로 감사조서의 수정 및 추가를 승인한 사례가 발견됨

- 내규로 품질관리검토자가 사전심리시간으로 심리대상회사 총 감사시간의 1% 이상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제도팀	감사인감리국
연 락 처	02-2100-2698	02-3145-7878